

학생지도분담(담당)교수제도설치규정

(제정 1981. 1.26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설치한 각 학과(전공)의 학년별 학생지도 분담교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담당업무) ①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은 소속 학과(전공)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·감독 및 지휘한다.

② 학년별 분담지도교수는 해당 소속 학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학생지도를 하며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을 보좌한다.

③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은 해당 소속 학과(전공) 학생의 지도업무에 관하여 학생취업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5.18>

제3조(임명) ①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은 해당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학년별 지도교수는 해당 학장의 추천으로 학생취업처장을 경유,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5.18>

③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 및 분담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2.7.22>

제4조(회의) 학생취업처장은 필요에 따라 학과장(전공주임) 및 분담지도교수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2.5.18>

제5조(예산집행) 분담지도교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7조(개폐)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기는 학교지도위원회 결의(재적위원 과반수 찬성)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.